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5명, 경정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9명은 타부처 인력(국세청 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금융위원회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5급 1명, 경찰청 경정 1명)으로 충원하고,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제1호부터”를 “제12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정비과”를 “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지원팀”으로 하고,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4호 중 “대책과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을 “대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6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⑫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2. 주택임대차시장의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3.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임대차신고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주택임대차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팀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토지실) ①·② (생략)	제8조(주택토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제12조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토지실에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지원과·민간임대정책과·토지정책과·부동산산업과·부동산평가과·부동산개발정책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제도과·공간정보진흥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주택정비과·주택임대차지원팀----- -----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삭제	
24. 전세·월세시장의 대책과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4. ----- 대책----- -----
25. ~ 27. (생략)	25. ~ 27.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신설>	⑫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임대차시장의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2. 주택임대차시장의 임대차 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3.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택임대차신고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 주택임대차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⑫ ~ ⑮ (생략)	⑬ ~ ⑮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⑯ 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신공항기획과(존속기한: 2021년 6월 30일)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항공주사	1
시설주사	1

2.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19
일반직 계	18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파견부처 : 국세청)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파견부처 : 금융위원회)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사무관 (파견부처 : 행정안전부)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1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 · 관리 ⑰ ~ ㉓ (생략) <신설>	<삭제> ⑱ ~ ㉔ (현행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와 같음) 제60조의3(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제61조(한시정원) ① · ② 삭제 ③ ~ ⑩ (생략) <신설>	제61조(한시정원)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주택임차인 보호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세무주사 (과건부처 : 국세청)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과건부처 : 금융위원회)	1
철도경찰주사보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세무주사보 (과건부처 : 국세청)	2
특정직 계	1
경정 (과건부처 : 경찰청)	1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1.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2. 제61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3. 제6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2

4. 제61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5. 제61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1
6. 제61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2
7. 제61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1
8. 제61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1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9. 제61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3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